

「약사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6일  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「약사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'19.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라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「모자보건법」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의약품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문 정비(안 제68조제4항)  
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나, 「모자보건법」의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적용

#### 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
- 전자우편 : [kjs228@korea.kr](mailto:kjs228@korea.kr)
- 팩스 : 043-719-2606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(전화 043-719-2621, 팩스 043-719-260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31조제2항·제3항·제9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·변경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(과장광고 등의 금지) ① ~ ③ (생 략) ④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. <단서 신설>	제68조(과장광고 등의 금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----. 다만,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31조제2항·제3항·제9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·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